

댓글의 폐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그 해결을 위해 사실적주장과 언론보도 등의 현행 법률문구를 수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의 틀을 상당히 크게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여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문제된 기사가 삭제될 경우 그에 부수된 댓글들도 같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된 댓글의 작성자를 직접 소환하지 않더라도 문제된 언론의 기사를 삭제하는 간접방식으로 문제의 댓글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저의 주장이 더욱 다듬어 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수 경인일보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

이번 발제를 통해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많이 던져주셨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언론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오늘의 토론에 투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서는 포털뉴스서비스나 인터넷신문의 정정보도청구가 전체 조정신청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뉴스 소비가 많아지고 있어 뉴스의 중심이 종이신문이나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이완구 총리의 사퇴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실시간 뉴스 검색에서 10위 밖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검색 1등은 소녀시대 유리와 오승환의 열애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뉴스 소비의 특징이 말초적이고 관능적이며 흥미 위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소비 행태로 인해 흥미 위주의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 오보가 자연

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정정보도청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터넷뉴스 소비의 편식현상이 심각하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뉴스 편식이나 말초적 뉴스 소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집국장으로 지내던 중 19년쯤 전에 작성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인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이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의 상대방 측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의를 거쳐 이러한 경우라면 기사를 삭제해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기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즉 기사삭제청구권의 문제는 판례로 결정되기 전에, 혹은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발제자께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두지말자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19년 전 혹은 21년 전에 작성했던 기사들까지 삭제해야 한다면 기사의 안정성 혹은 기사를 쓴 기자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사로 인해서 인격권의 침해를 받고 상당한 상처를 입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종이신문이나 방송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보다는 인터넷 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댓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댓글은 양날의 칼입니다. 기사를 썼는데 반응이 없으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사를 읽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댓글이 지나치게 악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를 인신공격하거나, 기사의 주인공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댓글은 기사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키는 기능도 하지만, 때로는 댓글로 인해 기자나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가해지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인격 침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댓글 역시 일정한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기사가 삭제되면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삭제되지만, 원래의 기사와 댓글이 무한정으로 복제·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지만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구제 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신문·방송 종사자들은 물론이며, 일반인들에게도 언론중재제도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으며, 댓글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룰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제한이 주어진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을 정보로 판단하고, 어떤 것을 뉴스로 정의할 것인지, 인터넷에서 무한 확장·반복되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기 (발제자,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토론자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임은 물론,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현수 국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은,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만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기사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기자들이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창작물을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 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요즘 언론사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실제 메시지 가공 과정, 그 가공 과정으로 만들어낸 콘텐츠, 그리고 그것의 유통범위가 어떠한지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사삭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당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광건 위원님께서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말씀해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사삭제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법체계나 법의 논리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피해구제방법이 실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